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885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2.

발의자 : 김위상 · 이달희 · 임이자
김선교 · 김승수 · 이인선
구자근 · 서범수 · 박정하
송석준 · 박충권 · 김용태
우재준 · 박성훈 · 이종배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정부 ·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
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의 제목 중 “전통시장 화재공제”를 “화재공제”로 하고, 같은
조 제1항 중 “전통시장의”를 “시장 및 상점가의”로, “전통시장 화재공
제”를 “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공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통
시장”을 “시장 및 상점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